|  |
| --- |
| 각 서승마여행은 언제든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수 있는 위험스포츠의 하나임을 인정함니다. 대한민국내 보험회사의 여행자 보험은 승마위주의 위험을 동반한 해외여행에 대해 어떠한 피해도 보상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몽골 승마여행은 전적으로 예약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아래 조항에 동의 함니다.여행사는 기승자의 안전여행을 위해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한다. 1. 승마중 사고 발생시 천재지변, 불가항력 외에도, 여행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가능한 경우가 아닌한 모든 사고에 대해 여행자 본인 책임원칙이며, 모든 피해 보상과 물질적 법적 책임을 여행사에 묻지 않을 것이며, 추후 어떠한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함니다.
2. 여행사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3.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에게 승마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그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도 원인 제공자 본인이 지겠습니다.
4. 미성년자와 동반여행일 경우 동반 보호자가 본 각서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함니다.
5. 2명 이상의 그룹예약일 경우 대표 예약자에게 본 각서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여행사는 통지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니다.
6. 여행사에 본 서면 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도 여행사로부터 전화, 전자메일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본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고 여행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미 서면동의 한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동의할수 없을 경우에 여행자는 출국전 까지 예약을 취소 신청할수 있습니다. 취소 패널티는 여행사의 취소 규정에 준함니다.
7. 승마외 일반 사고는 여행자 보험으로 갈음합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사항)

서명일자 : 20 년 월 일여 행 자 : (서명: ) 주)투어플러스 몽골여행 귀중주의) 본 내용 임의 변경 금지 |